

##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이승주\*\*

본 연구는 구체적 모형 설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후 청년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 빈곤은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해당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및 빈곤 문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월 25만원과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모형을 상정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수집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급 당사자인 19~29세 청년들에게서 제도 시행 시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까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이처럼 소득분배의 개선뿐 아니라 빈곤 문제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과 그 부모세대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청년기본소득, 모의실험, 소득재분배효과, 빈곤완화효과

### I. 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의 고용실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만19~29세 청년들

\* 본 논문은 LAB2050에서 진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연구를 진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New York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정책, 보편적 복지제도, 근로연계 복지제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다(lustrouschris@skhu.ac.kr).

의 고용률<sup>1)</sup>이 56.15%였으나,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 청년들의 고용률은 오히려 54.58%로 1.57%p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대 초반과 취직을 할 나이인 20대 중·후반을 나누어서 살펴봐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2009년 기준 19~24세 청년고용률은 40.89%였으나, 2018년에는 동 수치가 40.85%로 0.04% 낮아졌다. 물론 20대 중·후반 청년들의 경우는 동 기간 동안 고용률이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 증가수준이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영역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결과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청년들의 현 불안정한 미래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데 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42.1%로 35개국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53.3%로 미국 34.7%, 일본 40.6%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매일경제, 2018년 7월 10일자). 많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높은 취업문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일쑤이고, 또 가까스로 취업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항상 불안정하다보니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N포세대”와 같은 우울한 수식어구가 늘 붙어 다닌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기성세대들은 청년은 스스로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 이렇다보니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다른 계층들과 다르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더 이상 청년들이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과 달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당장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높은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득활동을 못하는 청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다른 취약계층 만큼

1) 본 연구에서 청년고용률은 만 19세~29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 중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계산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취업자는 통계청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나 청년들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고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완과 최준영(2017)도 2014년 기준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이 21.2%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연령대별로 노인빈곤율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20대 청년도 빈곤취약 계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요즘 청년들은 부모세대와 함께 동거하며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처럼 부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빈곤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목격한다.

물론 최근 이러한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깨달아 다양한 청년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 등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청년인턴제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보더라도 이 제도가 본래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 그렇다보니 여전히 의지만 있으면 스스로 빈곤탈출이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2017년 기준 전체 국민기초수급자인 1,491,650명 중 20~29세 청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6%인 91,882명에 그치고 있는 데서도 확인 가능하다(통계청, 2019).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행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까지 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전체 청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조차 교육·훈련의 전문성 부족과 경직성, 질 낮은 일자리의 연계, 신청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정병순, 김태욱, 2016). 이처럼 대부분의 청년은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으로서 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현행 선별적 복지제도 하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은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청년의 빈곤문제에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들의 빈곤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립이 지연되면 부모들은 부양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어서도 계속 자녀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부모세대의 빈곤문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김문길 외(2017)는 부모와 동거를 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빈곤율 중 전자가 후자보다 4.4%p 더 작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풀이된다.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 갈수록 지연되면서 이처럼 우리 부모세대가 50~60세가 넘어서까지 자녀 뒷바라지를 하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청년층으로부터 부양을 받기는커녕 이들을 되레 계속 돌보는 처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근시일내에 청년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곧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의 성장동력까지 잃게 되는 문제여까지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부모세대들이 대거 노인세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들을 부양할 청년세대들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부모세대는 자식을 위한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청년세대의 빈곤문제는 경제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 낮은 부가가치와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성장산업이나 제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빈곤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발맞춰 청년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꾸준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재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이행하고자 하면 짧은 시간 안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에게 더 촘촘하게 사회보호망을 제공하여 이들이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긴급 수혈을 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삶이 안정되면서 본래 특성인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되찾아갈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원하는 바를 자유로이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학계는 물론 정책 결정자 및 관료들까지도 청년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청년수당과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처음 2016년에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할 때만 해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난을 하던 정부도 2019년부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하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이는 정부가 자신들이 운영해오던 기존 청년지원정책보다 현재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대전, 전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여러 광역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년수당은 더욱더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청년수당들은 엄밀히 말하면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과거 구직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청년수당은 Atkinson(1996)이 제안한 “참여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참여소득이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무상 혹은 유상의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할 것으로 조건으로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에게나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Atkinson, 1996). 하지만 이러한 참여소득이 청년들에게 삶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을 제공할 것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직수당 성격의 소득보장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개발을 통한 창업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참여소득은 기본소득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를 다른 제도로 본다(윤홍식, 2017).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둔 청년수당 제도들은 취업을 하는 경우 바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 안정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련의 청년수당과 달리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자유안정성을 찾아주고자 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기본소득모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 운영방식과 달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청년들에게까지도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좀 더 기본소득 원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 운영방식과 달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게 된 청년들에게까지도 수급권이 보장되는 좀 더 기본소득 원형에 가깝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 모형을 활용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과연 청년기본소득이 이들의 안정된 삶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인지를 추측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전·후에 청년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예측해봄으로써 과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보고자 한다. 또한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년빈곤의 문제는 비단 청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청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해당 청년들을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및 빈곤 문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역사적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Thomas Paine이다. Paine은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토지는 모든 인류에게 속한 공유자산이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모든 시민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를 개간한 사람에게는 오직 자신이 개간하여 늘어나게 된 가치만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자산은 배당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하였다(Paine, 2004[1797]).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에 10%의 상속세를 부과해서 국가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통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15를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Paine이 주장한 시민배당(Citizen's dividend)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나 유럽, 호주 등 해외의 청년수당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취업자든 미취업자든 상관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시민권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수급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시민권에 기초해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시민배당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성남시의 청년배당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본소득 형태로 된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예측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을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 청년의 빈곤완화나 소득분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수당이 주로 구직수당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의 근로유인 효과에 주로 관심을 보일 뿐, 청년 빈곤문제 완화 효과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2016년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청년수당에 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지역수준에서 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많지 않고 특히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실증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년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기본소득의 소득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기본소득과 같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의 실증적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실제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실험(experiment)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직접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실험에 기반을 둔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

용하거나 가상의 자료를 만들어 모의실험(simulation)을 진행하여 효과성을 예측하는 방식도 정책효과성을 추정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직접적으로 실험을 시행하는 연구는 설계한 모형을 통해 실제로 직접 정책을 미리 구현해 그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urtless, 1995). 그러나 이러한 실험 연구는 아무리 다른 효과들을 철저히 통제해 처리효과만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실험 진행 중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외부변수까지 통제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Burtless, 1995). 따라서 의도했던 결과를 얻었다고 과연 그 효과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해 오염된 효과인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또한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참여자가 실제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야 한다(Heckman & Smith, 1995). 이러한 실험대상 집단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순간 호손효과(Hawthorne effect)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실험효과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히 크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하고자 실험대상자를 인터뷰 등을 통해 실험대상 집단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의도했던 대로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실험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실험을 통한 연구는 현실과 최대한 똑같은 조건 하 정책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여전히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자주 활용되진 않는다.

반면 모의실험방식은 실제 실험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예측하는 연구보다는 현실 반영력이 떨어지긴 하나, 예상치 못한 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정책효과성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미래 정책 효과를 예측할 때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모의실험방식은 특히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해 실제와 거의 같은 환경을 만든 후 효과성을 예측하는 연구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itton et al., 2000). 본 연구도 이처럼 구체적인 모형을 설계하여 모의실험(simulation)을 하는 방식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 시 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청년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제도인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 중 본 연구처럼 실증적으로 효과성을 예측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제도가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결과가 있다(Furman, 2016). Furman (2016)은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를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할 때 동일 재원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자연

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Furman의 부정적 입장은 Martinelli (2017)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Martinelli(2017)는 세금공제를 없앤 후 증가하는 세수를 모든 영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모형,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모형, 두 번째 모형에 추가로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모형을 활용해 모형별로 소득분배 효과를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결과 추가적으로 세금을 늘려 그 증가액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대부분의 영국민들이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모형마다 결과가 약간씩 다르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Martinelli는 기본소득제도가 분배정의 실현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조경엽(2017)은 프리드먼과 토빈이 주장한 음의소득세(NIT)방식과 머레이와 스페인식 기본소득제 방식으로 네 가지 모형을 설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음의소득세(NIT) 방식에서와 달리 오히려 보편적 기본소득 모형에서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한수(2018)의 연구에서도 예산증립적 기본소득 모형에서 빈곤층은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중위소득계층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기본소득 시행 후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예측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예산증가적 모형에서는 소득구간 간 세율과 기본소득 지급 금액을 조정하면 최빈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가 가능하긴 하나, 만약 예산증가적 모형에서 빈곤층에게 저부담·저급여 원칙을 적용할 경우 최빈층에서 가처분소득은 다시 떨어지게 됨을 밝혀냈다.

반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혜택을 통해 선별적 복지제도 혜택보다 더 바람직한 소득분배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존재한다. Korpi와 Palme(1998)은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도 일정 수준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때보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복지규모를 확대하는 데 덜 반대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자 할 때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자연스레 빈곤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모의실험 결과는 이처럼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이다. 핀란드 정부는 소득분배서비스 자료(Income Distribution Service Data)를 활용해 월 €1,000, €1,500 수준의 완전기본소득제도와 월 €550, €650, €750 수준의 부분기본소득제도 모형을 설계하여, 각각의 제



도 하에서 소득분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였다(Kela, 2016). 해당 연구 결과 완전기본소득제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 형식으로 제공할수록 더 강력한 소득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분 기본소득제도의 경우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해서 빈곤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때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rcarons et al.(2014)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만 18세 이상 시민들에게 년 €7,968 상당의 소득을 제공하고, 18세 미만에게는 년 €1,594를 지급하는 형태로 기본소득 모형을 설계하여 각각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도 기본소득 시행 후 지니계수는 기존 0.36에서 기본소득 0.2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보다 세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70% 정도의 시민들에게서 소득 증가가 나타났고, 소득감소를 보인 집단은 단지 소득 상위 3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이 소득분배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승호(2010)가 정률과세 모형, 부분기본소득모형, 차등과세모형의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소득분배효과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본 소득 제도 시행에 따른 세금효과까지도 고려하여 소득분배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연구결과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소득제도가 현행 제도보다는 소득분배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적·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되어 빈곤완화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또한 최태훈과 엄명배(2017)도 증세를 통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개인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과 저소득층에게만 월 100만원의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눠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현행보다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할 때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여러 기본소득 모형들을 중심으로 소득재분배를 예측하는 실증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실증연구들은 여전히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이들 연구 결과들은 기본소득 모형에 관한 효과성을 예측한 결과이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예측한 결과가 아니므로 이 효과들을 그대로 청년기본소득 효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인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도 보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전체 시민이 아닌 청년층으로 한정할 경우 또 다른 결과가 예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연령대 별로 효과성을 예측하고 있는 연구들이 없어서 본 연구처럼 청년이나 그 부모세대와 같이 연령대별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

나는지도 추측하기가 어렵다. 종합해볼 때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청년기본소득의 소득분배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거의 실증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구체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 실험 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리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시원적 의미에서의 실증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더욱더 정교한 모형들을 활용해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Ⅲ. 연구모형

####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특성

기본소득은 다양한 이념적 배경 하에서 정의되는 제도이므로 하나로 정의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기본소득에 관해 논의하는 여러 학자들(Ackerman et al., 2006; Offe, 2009; Raventos, 2007; Standing, 2017; Van Parijs, 2006)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특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정기적이고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는 무조건적 소득보장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개인을 수급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현행 공공부조제도와 다르다. 이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시혜적인 의미의 소득보장제도가 아님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년수당제도인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은 모두 청년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개별성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는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정원호 외(2017)는 기본소득의 주요 특성만 잘 지키고 있다면 현금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이나 자산유무에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현행 선별적 복지제도와 다르게 까다로운 자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효과적

이다(Columbino, 2015; 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집단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에 반해 기본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윤홍식, 2011).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재원문제에 부딪혀 시행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점차 그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해당 집단 내에서 보편적으로만 운영된다면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Raventos, 2007; 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또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자산조사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Offe, 1997; 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적 특성에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은 자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제한적이지만 보편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우선 신청한 자 중에서 대상을 따로 선발하고, 신청자격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산조사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에 반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노동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노동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제공된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이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에게 근로유인을 불어넣어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로서 개인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Widerquist et al., 2013). 좌·우 진영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바로 이 무조건성이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은 이러한 무조건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현행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신청대상자격을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의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년수당 신청 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활동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을 확인한 후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보다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에 더 가깝다. 참여소득 역시 서울시 청년수당과 운영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참여소득은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반드시 유급노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Atkinson, 1996). 따라서 당장 참여소득을 수급 받으면서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급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시장 참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Atkinson, 1996).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특징 중 충분성은 개인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tanding, 2017; 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Widerquist et al., 2013). 그리고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는지 판단의 기준으로 보통 최저생계비<sup>2)</sup> 수준이나 중위소득 50%정도의 소득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본다(Raventos, 2007; Widerquist et al., 2013). 이 때 이 충분성을 만족하면 이를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이라고 분류하고, 그에 못 미치는 경우 이를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으로 분류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2018년 기준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인가구의 생계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를 1인 최저생계비용 수준이라고 볼 경우 어느 정도 충분성은 만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 중위소득 50%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분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경우는 분기별로 25만원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충분성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본소득의 핵심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현행 청년수당들은 모두 기본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형들은 상기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핵심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본 연구와 같이 실험을 계획·설계하여 포괄적 복지의 대표적 형태인 기본소득형태로 청년수당을 도입하였을 때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청년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모형으로 설계해 효과성을 측정할 경우, 그 결과를 가지고 본래 의도했던 청년기본소득제도의 효과성으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할 모형들이 상기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의 핵심 특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하였다.

## 2. 청년의 범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므로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2) 다만 최저생계비용은 학자들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항에서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디까지를 최저생계비로 봐야할지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서는 아직까지도 각각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에 따라 청년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청년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의 하한 연령에 대해 여러 법률에서 도입 목적에 따라 제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25세부터 이상부터 청년이 된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5~18세, 그리고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의 하한 연령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시행 목적을 중심으로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역량 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면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이여야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하게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법률행위자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핸드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및 각종 계약 등을 진행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당가입이나 선거행위 또한 제한되는 「민법」상 미성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청년의 하한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청년의 상한 연령은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연령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동법은 청년의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2004년 제정되어 2009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래 동 법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자 2013년 말까지 한차례 연장된 후, 2018년 말까지 다시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현재는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한 번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동법 시행령에는 청년의 범위를 통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 시 예외적으로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청년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 법의 통상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대상을 29세까지로 정하였다. 무엇보다도 2018년 2분기「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19~29세 사람들의 가치분소득<sup>3)</sup> 평균은

949,434원이었던 반면, 30~34세의 경우는 해당 소득이 1,900,929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볼 때 30대를 20대와 함께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에는 평균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30대와 비교해서 20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빈곤문제에 더욱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 하, 굳이 법적인 기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상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 대상 집단도 19~29세 청년으로 다르고,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까지도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행 목적 또한 차이가 있다. 만약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처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특정 연령인구 집단의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회수당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 청년수당 운영방식처럼 노동시장 진입 전의 미취업자만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활동에 관심이 있든 없든 제공하는 기본소득 형태를 실험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청년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청년들의 탈노동화와 빈곤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율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과 그 형태와 목적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기본소득 모형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였다. 우선 수급대상은 상기에서 논의한 바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의 청년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수혜인원을 2017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총 7,566,946명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청년계층 모두에게는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면 개인당 매월 일정 수준의 현금이 청년수당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모형을 설계 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 바로 얼마만큼의 소득

3) 본 연구에서 가처분소득은 해당 연령층 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후 공적 비소비 지출인 경상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지출을 제한 총액으로 정의한다.

을 제공할 것인 지이다. 청년기본소득처럼 대규모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범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Pereira, 2017). 이는 이미 스위스의 기본소득 찬반 투표에서도 경험한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수준인 월 50만원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과 그보다는 시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절반수준인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두 번째 모형에서는 시행초기부터 충분성 원칙에 최대한 가깝게 적어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수준까지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하다보면 막대한 재원마련 문제에 부딪혀 결국 시행가능성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울 수 있는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지급수준을 낮게 조정하였다. 만약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재원을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고 가정할 때, 총 7,566,946명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월 50만원씩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총 대략 년 간 45조 4천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월 25만원으로 낮춘다면 대략 22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들어 증세로 인한 국민의 저항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표 1〉 청년기본소득 실험 모형별 특성

구분	청년기본소득 1안	청년기본소득 2안
목적	-청년의 빈곤완화와 삶의 질 향상	-청년의 빈곤완화와 삶의 질 향상
대상	-만 19세~29세 청년	-만 19세~29세 청년
수혜인구	-7,566,946명	-7,566,946명
지급방식	-매월 현금지급 -개인단위로 지급	-매월 현금지급 -개인단위로 지급
지급액	-월 50만원 -2018년 기준 1인 생계급여 수준	-월 25만원 -2018년 기준 1인 최저생활수준 <sup>4)</sup> 인 생계급여에 못 미침
소득/자산조사	-실시하지 않음	-실시하지 않음
지급조건	-노동 반대급부 없음 -취업프로그램 참여의무 없음 -정부사업 참여의무 없음 -재학생도 모두 지급	-노동 반대급부 없음 -취업프로그램 참여의무 없음 -정부사업 참여의무 없음 -재학생도 모두 지급
예산규모	-년 45조 4016억 원	-년 22조 7008억 원

4)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의 공공부조제도를 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1410>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청년기본소득 제공으로 늘어나는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기존에 공공부조 수급을 받아오던 가구들이라면 해당 혜택은 청년기본소득 지급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현실에서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특히 기존에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던 가구의 경우는 청년이 없는 빈곤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고민이 모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29세 청년들과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완화 여부를 예측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국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가구에서 청년자녀를 두고 있거나 혹은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만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분배를 예측할 때 기존 공공부조 수급가구이면서 상기에 언급한 해당 청년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사이에 형평성 제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청년기본소득 모형의 기본소득 원칙 충족여부

구 분		청년기본소득 1안	청년기본소득 2안
보편성	대상	미충족(청년에 한정)	미충족(청년에 한정)
	자산조사	충족(자산조사 없음)	충족(자산조사 없음)
무조건성		충족	충족
충분성		미충족 (1인 생계급여 수준)	미충족 (1인 생계급여 수준에도 미달)
개별성		충족(개인당 지급)	충족(개인당 지급)
현금지급		충족	충족

다음은 이와 같이 설계한 모형들이 과연 기본소득의 특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있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으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이 특성이 유지된다. 다만 여러 기본소득 논의(Offe, 1997; Raventos, 2007; Van Parijs, 2006)에서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노동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근로가능한 청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임을 미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청년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도 해당 연령층 내에서 자산조사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될 경우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무조건성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노동의사가 없어도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에 기초한 무조건적 성격의 소득보장제도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수급자인 청년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삶의 방식을 따를 권리와 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다(Offe, 2009). 마지막으로 충분성과 관련해서 이를 만족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른데, 보통 최저생활비용 수준부터 차상위 계층인 중위소득 50% 수준까지로 본다(Raventos, 2007; Van Parijs, 2006; Widerquist et al., 2013). 또한 충분성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과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1안은 1인 최대 생계급여 수준인 50만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완전기본소득 모형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으며, 2안의 경우는 제공 수준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기본소득 모형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래 완전기본소득 모형은 기존의 사회보장혜택을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청년기본소득 1안은 기존의 사회보장을 모두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두 모형 모두 완전기본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분기본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모형은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개별성 조건을 충족하며,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IV. 분석

### 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수집한 「가계동향조사」 2018년 2/4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전체 및 가구구성원의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전·세후 소득정보가 필요한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구성원의 개인 수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바람직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자료 대신 2018년 분기별 자료를 활

용하였는데, 이는 우선 통계청에서 분기 단위가 아닌 년 단위로 소득 및 지출 정보를 제공한 가장 최신 자료가 2016년 자료이기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처럼 시의성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분기별 자료를 합산하여 연간 자료로 만든 후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시하는 자료에는 분기별로 표본의 수가 달라 단순히 분기별로 합산 후 소득과 지출의 평균을 내서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연유로 본 연구는 연간 자료 대신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분기 자료를 기초로 하는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 이전의 초기 소득분배 상태나 빈곤율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계열상의 소득분배의 개선이나 빈곤 개선의 추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가정 시 기존의 소득분배 상태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추정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초기 소득분포 상태나 빈곤 정도보다는 그로부터의 상대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별 분기별로 나타나는 미미한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모의실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sup>5)</sup>이 가장 낮아 4분기 중 해당년도 내에서 가장 공평한 소득분배 상태를 이룬 2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중 사회전반의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없는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 그보다 더 높은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을까 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19~29세 청년 본인과 해당연령의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세대에서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19~29세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19~29세 청년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와 청년이 가구구성원으로 있는 가구를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후 해당 청년이 가구주로 있거나 가구구성원으로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 자료를 통해 각각의 가구가처분소득을 추산하였고, 이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개인 균등화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아울러 청년(19~29세)을 자녀로

5)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란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상위 20%(5분위)의 균등화된 개인소득의 평균을 하위 20%(1분위) 개인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 값이 클수록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과 비교할 때 상대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의 소득분배가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2/index.static](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2/index.static)를 참조하기 바란다.

두고 있는 부모집단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및 빈곤지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다만 부모에게 미칠 소득재분배의 변화를 추정할 때는, 19~29세 청년이 가구주이면서 부모가 가구구성원으로 있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과연 청년기본소득이 19~29세 청년을 부양하면서 나타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표 4〉, 〈표 5〉에서는 해당 연령의 청년이 독립적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각각 따로 제시하였다. 이는 물론 본 연구에서는 결국 이들을 모두 하나의 표본집단으로 구성해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추정하긴 하나, 청년이 독립적으로 가구주로 있는 경우와 청년이 가족구성원으로 있는 경우 그 일반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우선 「가계동향조사」에서 독립적으로 청년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들은 총 199명이었다. 한편 해당 연령의 청년이 가구구성원 중 하나인 가구들만을 추출해 본 결과 총 가구원수가 3,006명이었고, 청년(19~29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만을 추출해본 결과 총 1,515명에 달하였다.

〈표 3〉 청년(19~29세) 독립가구의 특성(n=199)

(단위: 명, 년, 원)

구분(연속형)	평균	표준편차	구분(범주형)	비 중
가구원수	1.54	.91	성별	남 51.76
연령	25.78	2.67		여 48.24
가구 총가처분소득(월)	2,193,441	1,625,05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1.11
가구총가처분 균등소득(월)	1,801,345	1,216,219		전문대 이상 78.89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 독립가구의 평균 연령은 25.78세였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1.54명이었다. 총 가구 가처분소득은 2,193,441원이었으며, 표준편차가 1,625,053원으로 청년가구 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청년 독립가구 집단의 성별은 남자가 51.76%로 여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율이 대략 80%에 달했다.

〈표 4〉 청년이 가구구성원인 가구전체의 특성(n=3,006)

(단위: 명, 년, 원)

구분(연속형)	평균	표준편차	구분(범주형)	비중
가구원수	3.57	.88	성별	남 45.54
연령	38.79	17.27		여 54.46
가구 총가처분소득(월)	4,863,397	2,645,20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49.37
가구총가처분 균등소득(월)	2,591,608	1,379,494		전문대 15.34
				대학교 이상 35.29

한편 〈표 4〉에는 청년이 가구구성원으로 있는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표본 집단의 평균 가구원수는 3.5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8.79세이었다. 아울러 총 가구 가처분소득은 앞서 청년 독립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4,863,397원이었으며, 균등화한 소득도 2,591,608로 청년 단독가구의 균등화소득보다 높았다. 또한 성별구성은 청년 독립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달리 남자가 45.54%, 여자가 54.46%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가구구성원이 50%에 달하여 청년 독립가구만을 본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는 청년이 가구구성원으로 있는 가구에서 19~29세 청년 본인 및 기타 가구구성원은 제외하고 이들의 부모들만을 중심으로 특성 파악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9~29세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의 평균 연령은 52.88세이었으며, 부모들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비중이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커져서 65%를 넘었다.

〈표 5〉 청년이 가구구성원인 가구에서 부모의 일반적 특성(n=1,515)

(단위: 명, 년, 원)

구분(연속형)	평균	표준편차	구분(범주형)	비중
연령	52.88	7.45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65.54
				전문대 이상 34.46

한편 청년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예측·분석하기 전에 우선 분석에 활용할 소득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ECD 국제비교기준 소득인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표 6〉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구성한 소득들을 제시하고 있다. OECD(2017)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을 포함한 소득을 시장소득으로, 그리고 해당 소득에서 경상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 지출을 포함하는 공적 비소비지출을 제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자, 배우자, 기타가구원 각각 개인별로 각종 소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도출한 뒤 이를 합산하여 총 가구 가처분소득을 도출하였다. 다만 가구소득을 활용해 소득분배의 변화를 살펴볼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수가 달라 통상적으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균등화한 균등화 소득으로 소득분배효과를 예측한다. 이 때 가구소득을 균등화소득을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활용하는 제곱근지수 방법을 통해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였다.

〈표 6〉 가처분소득의 구분 및 정의

구분	내용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까지 포함
사적 이전소득	가구간 이전, 각종 할인혜택 및 기타 이전소득으로 구성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에서 공적 비소비지출을 제한 소득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으로 구성
공적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지출로 구성

## 2. 분석방법

통상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지니계수나 앳킨슨지수를 통해 살펴본다. 다만 이러한 소득분배지수만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소득 분배 개선효과만을 살펴볼 수 있을 뿐, 대상 집단의 빈곤 수준 개선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추가로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빈곤지표들을 활용해 청년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예측해 보았다.

우선 소득재분배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완전 공평한 수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 지수로 로렌즈곡선(Lorenz curve)으로부터 도출된다(강신욱 외, 2006). 로렌즈곡선은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x축에 순서대로 나열한 후 소득의 누적분포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완전분배 상태를 달성하고 있는 이상적 사회라면 로렌즈곡선은 (0,0)에서 (1,1)을 연결한 45

도 일직선이 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로렌즈곡선은 45도선 아래쪽으로 넓은 면적의 포물선 형태를 그리게 된다. 이때 완전평등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을 45도선 아래의 넓이로 나누어 지니계수 값을 구하는데, 이때 지니계수값은 0~1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지니계수가 0이라면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구현하는 사회라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크다는 의미이다.(식(1))

$$Gini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tag{1}$$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text{ 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이 외에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는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가 있다. 앳킨슨지수는 그 사회가 소득불평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가치판단을 고려하여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 상태에서부터 지금의 사회후생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소득이 얼마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도출한다. 앳킨슨 지수는 다음 식(2)와 같이 표현된다.

$$A = 1 - (y_e/\mu) \tag{2}$$

$$A_\epsilon = 1 - \left[ \frac{1}{N} \sum \left( \frac{y_i}{\mu} \right)^{1-\epsilon} \right]^{\frac{1}{1-\epsilon}} \quad \epsilon \neq 1, \epsilon \geq 0 \tag{3}$$

$$= 1 - \exp \left[ \frac{1}{N} \sum \ln \frac{y_i}{\mu} \right] \quad \epsilon = 1$$

상기 식(2)에서  $y_e$ 는 한 사회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나타내고,  $\mu$ 는 그 사회의 평균소득이다. 만약 이 사회가 완전히 공평한 소득분배 사회라면  $y_e$ 는  $\mu$ 와 같게 되어 앳킨슨지수는 0이 되고,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앳킨슨 지수도 지니계수와 같이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식(3)에서  $\epsilon$ 은 한 사회가 소득불평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사회의 주관적 가치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이때  $\epsilon$ 가 커질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불평등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앳킨슨지수는 이처럼 다양한  $\epsilon$ 값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분배지수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 청년들 자신과 부모세대에게 어떠한 소득분배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청년기본소득이 이들의 빈곤문제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빈곤과 그 부모세대의 빈곤문제에 도움을 주는지를 예측해 보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율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빈곤완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사용되고 또 많이 활용되는 지수는 상대적 빈곤율(Headcount ratio)이다. 절대적 빈곤율이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빈곤선<sup>6)</sup>으로 할 때 그 아래 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지수이다(Foster & Sen, 2010).

$$H = \frac{q}{n} \quad (4)$$

위 식에서  $q$ 는 빈곤선 아래 집단의 수를  $n$ 은 한 사회의 전체인구수를 각각 의미한다. 이처럼 절대적 빈곤율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집단의 전체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한 빈곤율이 변하지 않아 빈곤선 아래 계층 내에서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절대적 빈곤율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상대적 빈곤율 상의 변화를 함께 예측하였다. 그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가 한 사회의 빈곤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빈곤갭(Poverty gap ratio)비율이다. 빈곤갭은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이를 반영한 지수로, 절대적 빈곤율이 동일한 국가들이라고 할지라도 빈곤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강신욱 외, 2006). 빈곤갭비율이 커질수록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이가 커지게 되며, 이와 같은 빈곤갭비율을 통해 빈곤계층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빈곤갭비율은 다음의 식 (5)과 같이 표현된다. 아래 식에서  $N$ 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며,  $G$ 는 빈곤선( $z$ )에서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y_i$ )을 뺀 값이다.

6) 이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빈곤선은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PGR = \frac{1}{N} \sum_{i=1}^N \frac{G_i}{z} \quad (5)$$

$$G_i = (z - y_i)$$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지수 중 또 다른 대표 지수가 바로 소득갭비율(Income gap ratio)이다. 소득갭비율은 빈곤선과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비교한 합을 빈곤선 아래의 인구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식(6)은 소득갭비율을 나타낸다. 아래 식에서  $p$ 는 빈곤선 소득을 나타내고,  $n_p$ 와  $y_i$ 는 각각 빈곤선 아래의 인구와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개인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소득갭비율은 빈곤선 아래의 인구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되는데, 그 결과 빈곤층 자신들이 느끼는 빈곤에 대한 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GR = \frac{\sum_{i=1}^n (p - y_i)}{n^p} \quad (6)$$

한편 FGT지수(Foster-Grrer\_thorbecke index)도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 중 하나이다. FGT지수도 빈곤갭을 활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는 빈곤갭비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FGT지수는 빈곤 가중인자(Poverty weighting factor)를 포함하고 있어서, 연구자 개인의 빈곤에 관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신욱 외, 2006)

$$FGT_\alpha = \frac{1}{n} \sum_{i=1}^q \left[ \frac{z - y_i}{z} \right]^\alpha, \alpha \geq 0 \quad (7)$$

위 식(7)에서  $z$ 는 빈곤선을,  $n$ 은 표본의 크기를,  $q$ 는 빈곤선 아래의 인구수, 그리고  $y_i$ 는 개인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alpha$ 는 빈곤 가중인자로 이 값이 커질수록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FGT지수도 다른 빈곤지수들과 같이 그 값이 커질수록 빈곤이 심화됨을 의미하며, 작아질수록 그 사회의 빈곤문제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중에 센지수(Sen index)가 있다. 센지수는 빈곤율, 소득갭비율, 지니계수로 구성되어 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수이다(Sen, 1976). 센지수는 아래 식(8)로 표현된다.

$$P = H[I + (1 - I) \times G_p] \tag{8}$$

위 식(8)에서 H는 빈곤율을, I는 소득갭비율을, 그리고  $G_p$ 는 저소득층의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센지수는 빈곤율, 소득갭비율, 저소득층 지니계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증가하면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있다(Sen, 1976). 센지수는 0~1값으로 나타나는데, 0에 근접할수록 그 사회의 빈곤문제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한 두 개의 지수만을 가지고 사회의 소득분배정도를 측정할 경우 개별지수가 소득분배를 압축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커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정책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처럼 다양한 소득분배지표와 빈곤지수들을 활용하여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지수들을 통해 분석을 진행해 봄으로써 통해 청년기본소득 시행 시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부모세대에서 보다 공평한 소득분배 정의를 달성하고 빈곤격차를 완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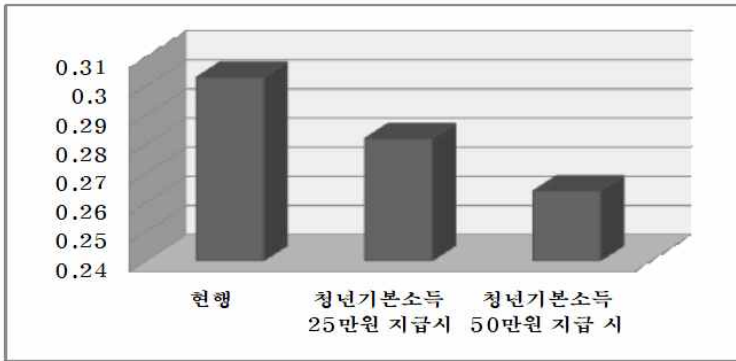
## V. 연구 결과

우선 <표 7>, <그림 1>, <그림 2>에서는 19~29세 청년들을 중심으로 현행,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제공 시, 50만원 제공 시 각각의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측 결과 모든 모형에서 현행보다 소득재분배가 더 평등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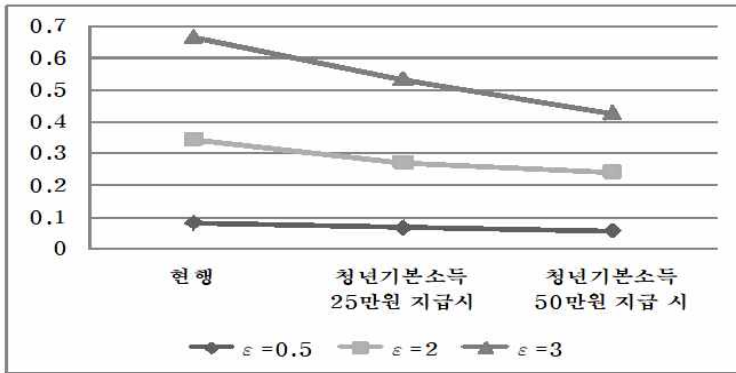
<표 7> 소득재분배 효과 예측(19~29세 청년 대상)

구 분	현 행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청년기본소득 50만원	
		지급시	지급시	지급시	지급시
지니계수	0.303	0.282	0.264		
앳킨슨지수( $\epsilon=0.5$ )	0.081	0.067	0.057		
앳킨슨지수( $\epsilon=2$ )	0.345	0.271	0.242		
앳킨슨지수( $\epsilon=3$ )	0.665	0.532	0.426		

〈그림 1〉 지니계수 비교(19~29세 청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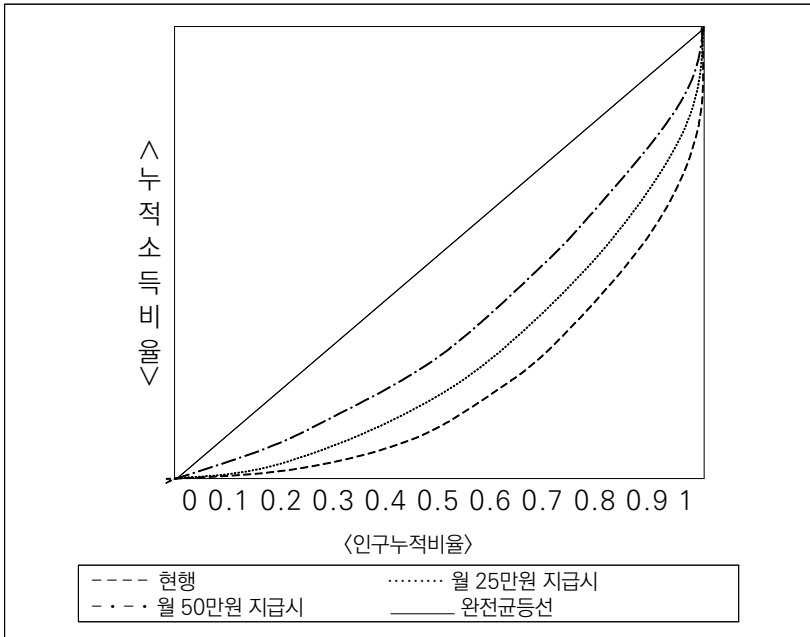
〈그림 2〉 앳킨슨지수 비교(19~29세 청년 대상)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니계수는 0.303이었던 반면, 청년기본소득을 월 25만원씩 제공하는 경우는 0.282로, 50만원씩 제공하는 경우는 0.264로 낮아져서 현행과 비교할 때 대략 13%정도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보였다. 앳킨슨지수는 각각  $\epsilon=0.5$ ,  $\epsilon=2$ ,  $\epsilon=3$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psilon$ 이 0.5인 경우는 부자가 빈자에게 1원의 소득을 분배해줄 때 0.75원만 전달되어도 용인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epsilon$ 이 2라면 빈자에게 0.25원만 전달되어도 만족한다는 의미이다(이준구, 1992).  $\epsilon=0.5$ 일 때 앳킨슨지수를 살펴보면 현행의 경우는 0.081이지만, 월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경우 0.067로 줄어들게 되며,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0.057로 낮아진다.  $\epsilon=2$ 인 경우와  $\epsilon=3$ 인 경우도 각각 현행 청년기본소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때 0.345, 0.665에서 25만원을 제공할 때는

0.271, 0.532로 개선되고, 50만원 지급 시는 각각 0.242, 0.426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청년기본소득 모형이 현행 제도 하에서보다 효과적이었으며, 기본소득 지급액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 로렌츠 곡선



〈그림 3〉에서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 현행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분배에 미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기본소득의 제공 수준이 높아질수록 19~29세 청년들의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분배지표만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지니계수의 값이 같은 두 사회가 있을 때 지니계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두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득분배율이 같다고 해서 빈곤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두 사회 간에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한 사회는 중위소득층까지 계층 간 소득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상위소득과 중위소득간의 소득격차가 큰 사회이고, 다른 사회는 상위소득과 중위소득계층 간에는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나 중위소득계층과 빈곤층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회

라고 가정하자. 이때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 빈곤층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에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소득분배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소득분배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빈곤지수들을 활용하여 각 상황별 빈곤완화 효과까지 살펴보았다.

〈표 8〉에는 다양한 빈곤지수들을 통한 상황별 빈곤완화 효과의 변화를 측정할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8〉 빈곤 완화 효과 예측(19~29세 청년 대상)

구분	현행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시	청년기본소득 50만원 지급시
절대적 빈곤율	0.139	0.092	0.053
소득갭지수	0.372	0.307	0.258
빈곤갭지수	0.054	0.037	0.025
Sen Index	0.076	0.052	0.036
FGT	$\alpha=0.5$	0.081	0.061
	$\alpha=2$	0.031	0.018
	$\alpha=3$	0.021	0.010
	$\alpha=4$	0.017	0.007

19~29세 전체 청년 인구 중 빈곤선 아래의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절대적 빈곤율은 현행 0.139에서 청년기본소득을 25만원 제공 시에는 0.092로 낮아지고 50만원을 제공 시에는 0.053으로 떨어져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현행보다 청년들의 빈곤문제가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빈곤완화 효과의 경우도 25만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50만원을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과 비교할 때 5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제공 시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 배 이상의 빈곤완화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균등 중위소득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후 빈곤선 아래의 인구수를 측정하는 소득갭(Income gap)지수에서도 모두 현행보다 빈곤계층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현행 소득갭지수는 0.372였으나, 청년기본소득을 월 25만원씩 지급 시에는 0.307로 떨어지고 월 50만원 지급 시에는 0.258로 떨어져 모두 현행보다 큰 빈곤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 사이의 소득의 평균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지수도 다른 빈곤지수들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빈곤갭지수는 0.054였으나,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제공 시에는 0.037로 낮

아지고 50만원 지급 시에는 두 배 이상인 0.025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갭 지수에서도 다른 빈곤지수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클수록 청년들의 빈곤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센지수는 빈곤의 양적, 질적 측면과 함께 빈곤층의 분배상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빈곤상태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센지수는 0과 1사이에서 나타나며, 0에 가까울수록 빈곤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센지수는 앞서 살펴본 빈곤율과 소득갭지수의 변화양상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지수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센지수는 0.076이었으나, 청년기본소득을 월 25만원 지급 시에는 해당 지수값이 0.052로 하락하였고, 50만원 지급 시에는 0.036으로 무려 두 배 이상이나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센지수는 빈곤율과 소득갭비율, 지니계수 중 하나의 지수만 변해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므로 세 가지 지수 중에서 어떤 지수에 영향을 받았는지 지수를 분해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상기 빈곤지수들에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보건대 빈곤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그리고 빈곤층 내에서의 분배상태 무든 측면에서 분배상태 개선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Foster-Greer-Thorbecke(FGT)지수로 빈곤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FGT지수는 빈곤선과 빈곤선 아래의 집단과의 소득차이로 나온 빈곤갭을 중심으로 도출한다. 다만 FGT지수는 빈곤갭지수와 다르게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개인의 빈곤에 대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  $\alpha=0.5$ ,  $\alpha=2$ ,  $\alpha=3$ ,  $\alpha=4$ 일 때 모두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빈곤완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alpha=0.5$ 일 경우 현행 제도 하 FGT지수는 0.081이었으나,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는 0.061로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시는 0.046으로 두 배 가까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빈곤층에 두 배의 가중치( $\alpha=2$ )를 주고 분석을 시행한 결과도 여전히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빈곤완화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lpha=2$ 인 경우 FGT를 살펴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 FGT지수는 0.031이었으나,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는 0.018, 5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는 무려 0.010으로 3배나 차이가 나서 아주 뚜렷한 빈곤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lpha$ 값이 증가할수록 빈곤선과 빈곤선 아래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 청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빈곤정도를 바라볼 때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 삶의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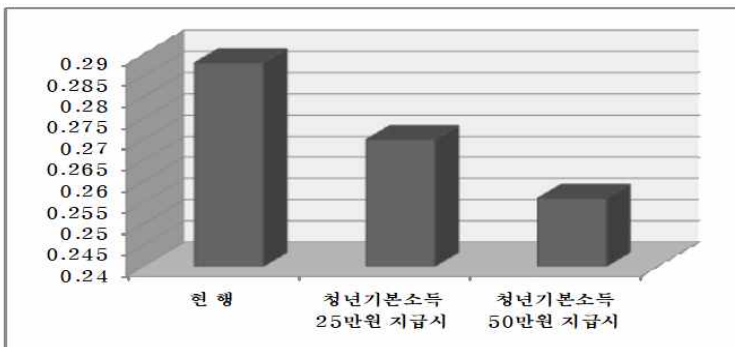
한편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19~29세 자녀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제공될 때 부모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관련 분석을 진행하여 <표 9>, <그림 4>, <그림 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이들을 자녀로 본 부모들에게서 물론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여전히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세대에서도 빈곤완화 효과도 보이고 있어 청년기본소득 수급당사자인 19~2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청년 자녀들에게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288이었으나, 청년기본소득을 25만원 지급할 때와 50만원 지급할 때 지니계수는 각각 0.270과 0.256으로 낮아졌다. 앳킨슨지수도  $\epsilon=0.5$  때를 기준으로 청년에게 아무런 지원이 없는 현행의 경우 해당 지수가 0.071이었으나, 청년자녀들에게 기본소득을 25만원 지급할 경우에는 부모들의 소득불평등도가 0.061로 줄어들고 50만원을 제공할 경우 0.054로 줄어들었다. 한편  $\epsilon=2$ ,  $\epsilon=3$ 인 경우도 기본소득 지원금이 높아지면서 지수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그 결과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분배 효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석결과 청년기본소득은 수급당사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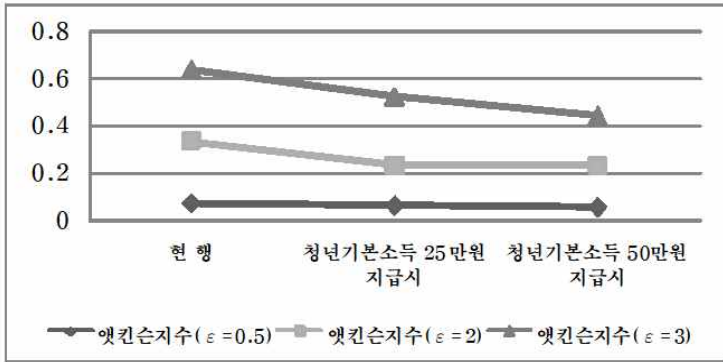
<표 9> 소득재분배 효과 예측(청년 부모 대상)

구분	현행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시	청년기본소득 50만원 지급시
지니계수	0.288	0.270	0.256
앳킨슨지수( $\epsilon=0.5$ )	0.071	0.061	0.054
앳킨슨지수( $\epsilon=2$ )	0.335	0.236	0.235
앳킨슨지수( $\epsilon=3$ )	0.637	0.520	0.440

<그림 4> 지니계수 비교(19~29세 청년 자녀를 둔 부모세대)



〈그림 5〉 애킨슨지수 비교(19~29세 청년 자녀를 둔 부모세대)



한편 <표 10>에는 19~29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그 부모세대의 빈곤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빈곤지수들을 통해 측정해 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세대의 경우 전체 표본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빈곤완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29세 청년자녀를 둔 부모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절대적 빈곤율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소득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0.129에서 매월 청년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개인 당 월 25만원씩의 청년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부모들의 절대적 빈곤율이 0.094로 낮아지게 되며, 월 50만원이 제공되는 경우는 0.060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5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절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세대에서도 현행보다 두 배 이상의 빈곤완화효과가 발생한다.

〈표 10〉 빈곤 완화 효과 예측(19~29세 청년 자녀를 둔 부모세대)

구분	현행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시	청년기본소득 50만원 지급시	
절대적 빈곤율	0.129	0.094	0.060	
소득갭지수	0.324	0.284	0.264	
빈곤갭지수	0.040	0.030	0.022	
Sen Index	0.058	0.044	0.032	
FGT	α=0.5	0.064	0.052	0.039
	α=2	0.022	0.015	0.010
	α=3	0.014	0.009	0.005
	α=4	0.011	0.006	0.003

한편 소득갭(Income gap)지수에서도 청년자녀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두 모형 모두 현행보다 빈곤계층인 부모세대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경우 소득갭지수가 0.324로 나타났으나, 청년 자녀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수가 0.284로 낮아지고 월 50만원 지급 시는 0.264로 낮아져 모두 현행의 경우보다 빈곤이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갭지수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 하에서 빈곤갭지수는 0.040으로 나타났으나, 청년기본소득을 25만원 제공 시에는 부모세대의 빈곤갭지수가 0.030으로 낮아지게 되며 50만원이 제공될 경우에는 0.022로 낮아진다. 청년기본소득 수급당사자인 청년의 경우보다는 기본소득 제공시 그 빈곤완화 효과도 소득재분배 효과만큼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소득재분배 효과와 비교할 때 빈곤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빈곤의 양적·질적 측면과 빈곤층 내의 분배상태 개선까지 모두 고려하는 센지수의 경우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0.058을 기록하였으나, 청년 자녀들에게 각각 25만원씩 지급할 때 그 부모 세대의 센지수는 0.044로 낮아졌으며, 50만원을 제공할 때는 무려 0.032로 두배 가량 낮아지는 것을 발견되었다. 센지수는 0에 가까워질수록 빈곤문제가 더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25만원, 50만원의 청년소득 제공 모두 부모세대의 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는 Foster-Greer-Thorbecke(FGT)지수에서도 상기 빈곤지수 결과들과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lpha=0.5$ ,  $\alpha=2$ ,  $\alpha=3$ ,  $\alpha=4$ 일 때 모두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 부모세대의 빈곤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alpha=0.5$ 인 경우를 제외하고  $\alpha=2$ ,  $\alpha=3$ ,  $\alpha=4$ 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50만원을 제공할 때 부모세대의 빈곤완화 효과는 현행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lpha=2$ 일 경우 현행 제도 하 FGT지수는 0.022이었으나, 50만원 상당의 청년기본소득 제공 시 부모세대의 FGT빈곤지수는 0.010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alpha=3$ ,  $\alpha=4$ 인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 VI. 결론 및 함의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는 현 청년 세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고용, 주거뿐만 아니라 결혼, 자녀에 희망까지 포기한 “6무 세대”로 전락해버렸다. 과거에는 높은 학력수준만 있으면 취업이 보장되고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오늘날은 이러한 학력과 취업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우리사회 청년



들은 상당히 치열하고 힘든 성장통을 겪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캐거루족”, “연어족”, “키퍼스족”, “피터팬” 등의 신조어들이 대변하듯,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점점 더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러한 청년 빈곤은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혼 시기를 늦추고, 급기야 출산의사까지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빈곤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빈곤문제를 단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일췌이다.

김문길 외(2017)는 청년빈곤이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 개개인의 빈곤상황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꼽았다.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19~34세) 빈곤율은 7.6%로 전체빈곤율인 13.8%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무려 청년의 빈곤율과 무려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상당수의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을 공유함으로써 인해 경제적 상황이 부풀려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청년들을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청년이 독립적으로 단독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빈곤율을 19.9%로 나타냈으나,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빈곤율은 5.6%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김문길 외, 2017). 따라서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청년빈곤율은 우리 사회 청년들의 현 상황을 옳이 담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저출산, 저임금, 높은 금융부채, 불안정한 주거 등 우리사회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은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청년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해야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김태완과 최준영(2017)은 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전체 청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빈곤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공공하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되고, 그 결과 성인이 된 자녀에 노부모까지 부양해야하는 50~60대 부모세대는 이중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성인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 심지어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있는 부모의 비중은 39%에 이른다(김유경 외, 2015). 성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전체 월 평균 73만원 정도였으며, 특히 50대보다는 60대

부모들에게서 평균 75만 4000원으로 자녀부양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김유경 외, 2015). 이렇듯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해서 부양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노령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청년층이 이러한 부모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현실 하 이러한 성인 자녀의 추가적 부양 부담은 부모세대의 노후를 위협한다. 따라서 청년의 빈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노령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노인빈곤의 문제가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청년기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준비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현재 삶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연령별 소득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30대 초반(30~34세)의 경우 소득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24%에 머물렀으나, 과거 같으면 취직을 해서 소득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을 25~29세 청년들은 현재는 45.63%로 30대 초반 연령층보다 두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24세의 경우는 다시 20대 후반의 거의 두 배 수준인 8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의 빈곤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안보이자, 최근에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일도 안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소위 NEET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청년 총인구 대비 13.7%였던 NEET족 비율은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는 14.8%를 차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그리고 이제는 청년들의 문제가 고스란히 부모세대에게까지 전이되어 청년 빈곤이 부모세대까지 동반 빈곤에 빠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청년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청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변하는 기술발전으로 노동시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에게 근본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청년 정책들은 여전히 주로 빈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설사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청년정책들은 대부분 고용 창출이라

는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청년들을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 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청년정책은 이제 과거 고용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기존의 평생직장이라는 의미가 빠르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매일 매일 새롭고 창의적인 일자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청년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안한 시기를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창의·혁신과 같은 호사를 누리기는커녕 개인의 실질적인 역량을 심분 발휘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기본소득이 현 청년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책으로 고려되고 이유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을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고 본다(Fitzpatrick, 1999; Offe, 1997; Raventos, 2007; Standing, 2017; Van Parijs, 2006). 특히 무조건적인 성격의 기본소득을 수급 시 수급자들은 노동시간을 다소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자신의 교섭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청년 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청년들은 좀 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어느 하나 마음대로 맘 편히 하지 못하던 우리 청년들에게 이처럼 아무 조건 없는 현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하도록 놔둔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들이 자율과 책임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런 긍정적 과정이 지속된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결국 능동적으로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의 창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청년이 사회에서 온전히 제 자리를 찾아간다면 자연스레 부모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게 되며, 그 결과 자식 덕에 부모가 빈곤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뿌리내리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청년기본소득 수급 당사자인 19~29세 청년들에게서 제도 시행 전 지니계수가 0.303이었는데, 기본소득을 제공 후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월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0.282로, 그리고 50만원이 지급될 경우에는 0.264까지 떨어졌다. 앳킨슨지수로 예측해 본 결과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확인되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 수준의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청년기본소득은 그들 자신에게만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개선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9세의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에서도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지니계수는 0.288이었으나 월 25만원 지급 시는 0.270로, 월 50만원 지급 시는 0.256까지 낮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까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인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50~60대가 지출한 비용이 월 평균 73만원임을 고려할 때, 월 5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부모들의 부양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이처럼 소득분배의 개선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과 부모세대 빈곤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예컨대 청년 개인들의 빈곤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든 빈곤지수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 시 빈곤완화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거의 모든 빈곤지수에서 2배 이상의 빈곤완화 효과가 예측되었다. 특히 빈곤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더욱더 그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FGT지수의 가중치가 0.5에서 2, 3, 4로 커지면서 두 배정도 차이를 보이던 빈곤지수가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과 후 차이가 3배, 4배, 5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개선 효과는 비단 청년 본인에게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고, 해당 연령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의 경우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 부모세대의 빈곤효과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갭지수와 Sen 지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수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 시 최대 2배 가까운 빈곤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부모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빈곤계층에 가중치를 더 줄수록 빈곤완화 체감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년기본소득은 특히 가난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분배와 빈곤완화에 있어 현행 선별적 복지제도보다는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이 청년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기에 분석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재원마련 측면에서 시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년기본소득을 전국단위로 시행할 경우 해당연령 청년 총 7,566,946명에게 매일 50만원씩을 지급할 때 년 45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월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년 22

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 정부 사업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을 고민할 때 재원마련 문제로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019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23조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를 청년기본소득 예산으로 전용하고,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예산, 기타 고용 관련 예산 일부를 청년기본소득 재원마련에 활용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기 힘들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효과성에만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재정적 시행가능성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예산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한 증세 없이 시행 가능한 모형을 설계해 효과 및 비용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의실험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정책효과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실험 결과와 똑같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Mitton et al, 2000). 특히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인의 인식이나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 자료상에는 이러한 행태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모형이 잘못 설계된 경우 실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의실험을 통한 예측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형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계별로 다양한 검증절차를 통해 내·외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체적인 모형을 설계하여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가정 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봄으로써 향후 청년기본소득 논의에 실증적인 효과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혁신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단일 사업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처럼 구체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추상적 수준에서의 논의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 경우 제도의 필요성을 아무리 크다한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 실증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청년기본소득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현행보다 더 효과적인 소득분배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금융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청년들의 삶은 점차 더 피폐해져가고, 그 결과 현재 청년들은 어떠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존의 경직적이고 선별적인 고용 중심의 정책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기본소득이 어찌 보면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최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청년기본소득의 소득분배효과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기조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위기가 노동시장의 이분화 및 불안정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 성장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만으로는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 케인지안/칼레키안(Post-Keynesian/Kaleckian)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주도형 성장모형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 모형에서는 소득분배의 향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확대를 통한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haduri A & Marglins, 1990). 따라서 경제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보다는, 소득분배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때 소비증대와 생산증가가 이루어진다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더 중요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의 증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노동시장 정책에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양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이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

승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이들이 고용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특히 김대일, 이정민(2019)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용직 일자리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 통계로 살펴본 결과 2018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2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7.1%였던 것과 비교할 때 격차가 오히려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KBS, 2009.04.18). 최근 한 경제인식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비중은 43.3%였으며,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52.6%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중앙일보, 2018.12.04.).

이러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장에 너무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 활력을 오히려 꺾어버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 전반의 성장을 둔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실업이 만연하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소득재분배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노동시장 고용불안으로 인해 청년빈곤이 심각해지는 현 실태 하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도입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비를 진작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청년기본소득이 현 문재인 정부의 침체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지역적 차원에서 소규모 실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제도가 향후 전국단위의 제도 구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강신욱·여유진·김진욱·김태완·최현수·임완섭. 2006. 《우리나라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서울: 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2018. 《NABO 산업동향 & 이슈 8월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김대일·이정민. 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2019년 경제학 공동학

술대회 자료집》.

김태완·최준영. 2018. “청년의 빈곤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pp. 6-19.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선·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이여봉·최새은·김가희·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고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 185-212.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54, pp. 81-119.

정병순·김태욱. 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정원호·이상준·강남훈.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경엽. 2017.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최한수. 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매일경제》. 2018. “韓 청년고용률 42%...OECD중 ‘최약.’” 7월 10일.

《KBS NEWS》. 2019. “[소득격차 확대] 비정규직, 20년간 바뀐 건 더 벌어진 임금 격차.” 4월 18일.

《중앙일보》. 2018. “문제인정부 경제정책 긍정 22%, 부정 43%.” 12월 4일.

통계청. 2019.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 시도별, 성별, 연령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117_117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19년 4월 22일)

Arcarons, J., Raventos, P. D., and Torrens, M. L. 2014. “Feasibility of Financing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De Gruyter*, 9(1-2): 79-93.

Atkinson, A. B. 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244-263

\_\_\_\_\_. 1996. *Public Economics in Action: The Basic Income/Flat Tax*



- Propos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ijs, P. 2006.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Alternative Cornerstones for a more Egalitarian Capitalism*. Madison WI: Real Utopias Project.
- Bhaduri A., and Marglin S. 1990.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 375 - 393
- Burtless, G. 1995. "The case for randomized field trials in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 63-84.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Foster, J. and Sen, A. 2010. "On Economic Inequality after a quarter century", in Sen, A.(ed.)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urman, J. 2016. *Is This Time Different?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marks at AI Now: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Near Term*, New York University, July 7, 2016. Retrieved September 30, 2018 fr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page/files/20160707\\_cea\\_ai\\_furman.pdf](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page/files/20160707_cea_ai_furman.pdf)
- Heckman, J. and Smith, J. 1995. "Assessing the case for social experime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 85-110.
- Kela. 2016. *From idea to experiment: Report on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Retrieved from [http://www.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1N08GY2nIrZo/content/from-idea-to-experiment-preliminary-report-on-a-universal-basic-income-completed](http://www.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1N08GY2nIrZo/content/from-idea-to-experiment-preliminary-report-on-a-universal-basic-income-completed).
- Korpi, W. and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 Martinelli, L. 2017. *Exploring the Distributional and Work Incentive Effects of Plausible Illustrative Basic Income Schemes*. 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 University of Bath. Available at: <http://www.bath.ac.uk/publications/exploring-the-distributional-work-incentive-effects->

of-plausible-illustrative-basic-incomeschemes/attachments/Luke\_WP2\_Web.pdf

- Mitton, L., Sutherland, H., and Weeks, M. (Eds.) 2000. *Microsimulation Modelling for Policy Analysis: Challenges and Innov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7.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 e.htm>
- Offe, C.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Goodin, R. E. and Michell, D. (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I* (pp. 87-114),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 \_\_\_\_\_. 2009.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Analyse & Kritik*, 31(1): 49-79.
- Paine, T. 2004. "Agrarian Justice" (1797), in Paine, T., *Common Sense and Agrarian Justice*, Harmondsworth: Penguin.
- Pereira, R. 2017. *Financing Basic Income: Addressing the Cost Objection*. Palgrave Macmillan.
- Raventos, D. 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London: Pluto Press.
- Sen, A. K.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44: 219-231.
-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London: Penguin.
- Van Parijs, P. 2006.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in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ijs, P.(eds.)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of a More Egalitarian Capitalism*. London: Verso.
- \_\_\_\_\_.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Widerquist, K., Nguera, J. A., Vanderborght, Y., and De Wispelaere, J. 2013.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Oxford: Wiley Blackwell.

## **Analysing the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Focusing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Seungju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Youth Basic Income (YBI, hereafter) will bring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mong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This study designs two specified models. One model is designed to provide KRW 500,000won on a monthly basis, while the other is designed to pay KRW 250,000 won to all the young people aged between 19 and 29 residing in South Korea. To estimate, this study used the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the second quarter of 2018. Sinc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ffects of YBI both on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the sample of young individuals aged 19 to 29 as well as that of those parents whose sons or daughters fall into the relevant age category are chosen from the original dataset.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young people as well as their parents would be better off with YBI, which elevates the level of autonomy among the recipients to make an unconditional decision on their life, rather than with the current rigid and selective employment-oriented policies.

※ Keywords: Youth Basic Income, Simulation, Income Redistribution, Poverty Alleviation